##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89 발의연월일: 2025. 1. 2.

발 의 자:김성원·최은석·이종배

박충권 · 김선교 · 임이자

김소희 • 박성훈 • 이인선

김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공무원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이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이등급은 중증 이상의 부상자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부상자라 할지라도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로인해 국가의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

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4제1항).

법률 제 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전단 중 "6급 및 7급"을 "6급 · 7급 및 8급"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
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 ①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	
· 3급 · 4급 · 5급 · <u>6급 및 7급</u>	<u>6급·7급 및 8</u>
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	<u> </u>
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